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5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정호·이수진·최기상

박희승 • 전진숙 • 이연희

윤후덕 • 정성호 • 임미애

허종식 · 이훈기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·건물·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·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을 지원하 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,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.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

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국가・지방자치단체의 출	제17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
연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	연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
<u>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</u>	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・운
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	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
행자에게 출연(出捐)할 수 있	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
<u>다.</u>	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
	<u>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